



: 2017-09-06

## 대 전 지 방 법 원

### 제 3 민 사 부

### 판 결

사 건 2016나110022 부당이득금 반환 및 계약무효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성저축은행

제 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. 10. 11. 선고 2016가소11202 판결

변 론 종 결 2017. 7. 7.

판 결 선 고 2017. 8. 18.

#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,975,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6. 1.부터  
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  
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).



: 2017-09-06

## 이 유

### 1. 인정 사실

가. 원고는 2013. 3. 25.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기간 2013. 3. 25.부터 2013. 5. 15.까지 50일, 이율 34.675%(이자 매일 지급)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. 원고는 위 대출 만기일이 도래할 무렵인 2013. 5. 14.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기간 2013. 5. 14.부터 2013. 8. 22.까지 100일, 이율 34.675%로 정하여 대출받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, 그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다음 나머지 액수를 지급받았다. 원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4. 12. 29.까지 피고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각 대출계약(이하 각 차수별 대출계약을 통칭할 때는 '이 사건 각 대출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	대출금액	신규일자	만기일자	대출기간(일)	이자율(%)	(일 납) 이자금액
1회차	3,000,000	2013-03-25	2013-05-15	50	34.675	2,850
2회차	3,000,000	2013-05-14	2013-08-22	100	34.675	2,850
3회차	5,000,000	2013-07-29	2013-12-26	150	34.675	4,750
4회차	3,000,000	2014-01-29	2014-05-09	100	34.675	2,850
5회차	3,000,000	2014-03-21	2014-09-17	180	34.675	2,850
6회차	4,000,000	2014-06-30	2014-10-08	100	34.675	3,800
7회차	5,000,000	2014-08-29	2015-03-17	200	34.675	4,750
8회차	5,000,000	2014-12-29	2015-07-17	200	29.2	4,000

나. 피고는 위 1회차부터 7회차까지 대출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때마다 피고가 개설한 원고 명의의 한성저축은행 예금계좌(계좌번호: B, 위 계좌는 2014. 12. 29. 해지되었다)로 먼저 대출을 실행하여 부금 명목의 돈을 1회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.

다. 원고는 피고에게 또 다른 원고 명의의 한성저축은행 예금계좌(계좌번호 : C)로



주기적으로 돈을 입금하였는데, 매일 위 계좌에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서 정한 각 대출이율에 의해 산정된 대출이자와 함께 '부금' 명목의 돈(다만 원고가 보유한 위 계좌거래내역에는 '이자이체'라고만 표기되었다)이 피고에게 이체되었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 내지 5호증, 을 제10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당사자들의 주장

### 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1)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의사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, 당시 신용부금에 관한 일체의 설명을 받지 못하였는바, 부금납입계약 체결에 동의한 적이 없다.

2) 형식적으로 부금납입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더라도,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에 부금 수입에 관한 세부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점, 8회 대출을 받는 동안 부금가입사실을 통지받거나 부금 통장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는 점, 납입된 부금으로 대출금을 상계 처리할 때 그에 대한 통지가 누락된 점, 피고가 각 잔여 대출금채무와 부금을 상계 처리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부금납입계약은 무효이다.

3) 한편,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출금 이자와 함께 수취한 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을 대출한 대가로서 이자로 간주된다.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'대부업법'이라 한다)이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원고로부터 이자를 징수한 것이므로, 위 부금 수수에 관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
4)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수한 부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



: 2017-09-06

므로, 원고에게 위 부금과 대출금 이자를 합한 금액 중 대부업법이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2,975,04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.

#### 나. 피고의 주장 요지

- 1) 원고는 총 8회에 걸쳐 피고와 이 사건 부금납입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고, 피고로부터 위 신용부금의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급부금대출을 받은 것이다.
- 2) 부금은 장래 대출금 상환의 담보로 수수될 뿐, 금전대출의 대가로서 원본과 별개로 수취되는 이자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대부업법 제8조에서 정한 '이자'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### 3. 판단

#### 가. 이 사건 각 부금납입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

- 1) 신용부금업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을 납입하게 하여 그 기간 중에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(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3호).
- 2) 갑 제1, 2, 4, 5호증, 을 제2, 10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금납입계약도 함께 체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- ①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작성한 제1 내지 3회차 각 대출신청서의 대출과목란이 '부금급부금'이라 기재되어 있고, 제4 내지 8회차 각 대출신청서의 경우 그 제목이 '대출신청서 및 부금납입계약서'로서 그 대출과목란 역시 '부금급부금'이라 기재되어 있다.



② 원고는 각 대출신청서와 함께 각 부금납입계약서에 서명·날인하였고, 각 부금납입계약서의 계약급부금은 원고가 자필로 기재하였다. 한편 갑 제1호증의 2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각 부금납입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위 계약서상의 계좌번호, 계약기간, 만기일,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란이 백지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. 그러나 위 각 기재란이 백지 상태임에도 원고는 각 부금납입계약서에 부동문자로 된 계약조항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의 의사로서 계약급부금 액수를 자필로 기재하고 위 계약서에 서명·날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. 이 사건 부금납입계약은 원고가 대출을 받는 데 있어 신용의 공여를 위해 체결된 점을 고려할 때, 위 각 기재란이 백지임에도 계약서에 서명·날인한 원고의 의사는 위 기재란을 피고가 사후 작성하는 것에 대해 양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. 나아가 부금납입계약은 대출계약과 계약일, 만기일이 동일하므로, 8회에 걸쳐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사항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. 그렇다면 부금납입계약서의 일부 기재란이 원고의 서명·날인 당시 백지였다가 사후에 피고 측에서 보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부금납입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.

③ 원고는 2014. 12. 29. 부금납입계약서에 서명·날인할 당시 피고로부터 부금급부금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았다. 위 상품설명서에는 부금급부금 상품의 개요 및 대출금액이 부금을 한도로 하고, 대출기간 역시 부금의 만기일 이내에서 결정된다는 점, 부금을 최종회차분까지 납입하였을 경우 만기일에 지급되는 적금 등의 납입 원리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점 등 부금납입계약이 대출계약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.

④ 원고는 피고 측 직원 D으로부터 부금급부금 상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



: 2017-09-06

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위 상품설명서에 자필 서명·날인을 하였다. D 역시 원고에게 총 8회에 걸쳐 위 '대출신청서 및 부금납입계약서'를 작성할 당시 부금납부금 상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.

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동종의 대출계약을 8회에 걸쳐 체결하고, 대출금을 수령하고, 이자를 납부하였는데, 그 때마다 대출금 이자와 함께 그보다 비교적 큰 액수의 부금 역시 피고에게 납부되었다. 비록 원고가 보유한 통장 거래내역에는 위 이자 및 부금납부내역이 '이자이체'라고만 표시되기는 하나, 원고로서는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더라도 대출이율에 의해 산정되는 이자(8회차 대출이자 기준 4,000원)보다 더 큰 액수의 부금(8회차 부금 기준 24,827원)이 포함된 금액이 매일 이체되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,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피고로부터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았다.

3) 한편, 원고는 앞서 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금납입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,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.

① 피고가 원고 명의로 보통예금계좌(B)를 만들어 제1 내지 7회차 대출 간 초회 부금을 출금해오다 2014. 12. 19. 위 계좌를 임의로 해지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. 그러나 이는 피고가 초회 부금을 납부 받기 위하여 편의상 택한 방식으로 보일 뿐, 비록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위 계좌를 만들었다거나, 원고가 위 예금계좌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금납입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.

② 피고가 원고에게 부금통장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.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각 부금납입계약 제2조에 따른 신용부금채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 및 당해 신용부금 통장의 인도 약정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, 원고가 부금통장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금납입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.



③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대출신청서의 수신란 및 부금납입계약서의 부금에 관한 기재란 상당수가 백지인 상태에서 위 각 서류에 서명·날인한 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각 대출 및 부금납입계약체결 이후 부금계좌를 생성하는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, 원고는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 백지 기재란을 피고가 사후에 보충할 것을 전제로 위 계약체결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.

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가 기존 대출금채무와 그 때까지 납부한 부금을 상계 처리함에 있어 원고에게 상계통지를 따로 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. 그러나 신용부금의 성질상 이 사건 부금납입계약상 부금은 결국 대출금 만기에 대출금과 상계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, 이 사건 각 부금납입계약서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가 담보설정한 부금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대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, 피고가 원고에 대한 통지 없이 위 부금으로 기존 대출금과 상계하였다 는 점 때문에 이 사건 부금납입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.

⑤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체결 당시 대부이자율 자필 기재가 누락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, 그것만으로 이 사건 부금납입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.

#### 나. 대부업법이 정한 제한이율 초과 부분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

1)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'대부업법'이라 한다)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·할인금·수수료·공제금·연체이자·체당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,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(대법원



: 2017-09-06

2014. 11. 13. 선고 2014다24785 판결 참조). 나아가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징수한 돈을 나중에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, 그 반환 조건이나 시기, 대부업자의 의사나 행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약정이 대부업법의 제한 이자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반환의사가 없거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징수한 돈은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한다(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도8289 판결 참조).

2) 을 제6, 7,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부금납입계좌와 대출금계좌를 각각 생성하고, 대출금 지급에 관한 여신거래계좌 거래내역과 부금 납입에 관한 적립성 거래내역을 별도로 관리한 사실, 원고는 총 8회에 걸쳐 대출받은 금원을 대체로 만기 전에 중도 상환하고 재대출을 신청하였는데, 중도 상환시까지 납입되어 있던 부금의 총액이 대출금 상환채무와 상계된 사실, 위 상계 후에도 상환되지 않은 잔존 채무는 새로운 대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출금으로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 부금은 당사자 간에 금전대차의 대가로 수수된 것이 아니라 부금납입계약상 장래 대출금 만기에 대출금과 상계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그 이익이 귀속될 것이 예정된 금원으로서, 반환 조건이나 시기에 비추어 그 약정이 대부업법이 정한 제한이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반환의사가 없거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.

①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아닌 부금납입계약에 기하여 위 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와 함께 이체받았다.



: 2017-09-06

② 위와 같이 이체된 부금은 즉시 대출금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에 누적적으로 예치되었다.

③ 부금납입계약의 내용 자체가 대출금 만기(또는 중도해지시) 그 때까지 납입한 부금 전액이 대출금(급부금)과 상계 처리되어 원고로서는 언제나 부금의 액수만큼 대출금채무를 면하게 되는 구조이므로, 피고가 장래 납입될 부금 상당의 이익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이 위 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.

④ 실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부금납입계약이 중도 해지될 당시 그 때까지 납부한 부금은 당초의 목적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해야 할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충당(상계 처리)되었는바, 피고가 대출금과 별개로 원고로부터 동액 상당을 수취하여 그 이득을 보유하였다고 할 수 없다.

#### 4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정정미

판사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윤성진

판사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이창환